

수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715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715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2090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변론 종결2021. 3. 9.

판결 선고2021. 4. 6.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2090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8. 4.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218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설정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유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물론 수익자인 피고에게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C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재대금 229,853,674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체결된 것이고, C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대금을 매월 20,000,000원씩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2018. 12. 5.부터 매월 5일 50,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지불약속을 하였다. 피고는 C과 정상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채무초과인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대금이 229,853,674원에 이른 상황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C은 2018. 5. 15.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자재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129,853,674원은 2018. 6. 5.부터 20,000,000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담보채무도 2018. 11. 5. 이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C은 2018. 5. 16. 피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0장과 액면금 29,853,674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다만 위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은 2018. 6. 5.부터 2019. 4. 5.까지로 각 달리하여 발행함),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5년 6월경부터 피고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2년간 별다른 담보 없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다가 C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8. 4.경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액수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미지급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분할지급 약정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C에게

대금을 변제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정하경

판사박선민

별지